#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8. 27. 행정재무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: 2020. 8. 14. /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8. 19.

다. 상정일자: 2020. 8. 26.

(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## 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기획재정국장

나. 제안이유

외국인 투자 감면 규정이 종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(안 제5조)
- 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감면 제외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해당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(안 제12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78조의3, 제177조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2 등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- 다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0. 5. 1. ~ 5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. 특기할 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 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「조세 특례제한법」에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- 검토 결과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을 정비하고,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규정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과 조항을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 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**7. 토론요지:**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**기타 필요한 사항**: 없음